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정 은

2023년 8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




지도교수 고 관 우

김 정 은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김정은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상 미	
위 원	남 진 열	
위 원	고 관 우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3년 8월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 -

Kim, Jeong-Eun

(Supervised by professor Ko, Kwan-Wo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3 . 8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정의	7

II. 이론적 배경

1. 양육행동	8
1) 양육행동의 개념	8
2) 양육행동의 유형	9
2. 양육효능감	11
1) 양육효능감의 개념	11
2) 양육효능감의 유형	12
3. 아동권리인식	14
1) 아동권리의 개념	14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과 유형	15
3) 아동권리인식의 중요성	18
4. 선행연구고찰	19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4
2. 연구모형	24
3. 측정도구	25
1) 양육행동	26
2) 양육효능감	27

3) 아동권리인식	28
4. 자료의 분석	29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33
3.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	35
4.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48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51
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	56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62
2. 제언	66
참고문헌	68
Abstract	76
부 록	79

<표 목차>

<표 1> 설문지의 구성	25
<표 2>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26
<표 3> 양육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27
<표 4> 아동권리인식 척도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28
<표 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6> 연구 대상자의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	32
<표 7> 양육행동의 기술통계	33
<표 8> 양육효능감의 기술통계	34
<표 9> 아동권리인식의 기술통계	34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차이	35
<표 11>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차이	37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차이	38
<표 13>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차이	39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의 차이	40
<표 15>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의 차이	41
<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차이	42
<표 17>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차이	43
<표 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44
<표 19>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45
<표 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권리인식의 차이	46
<표 21>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아동권리인식의 차이	47

<표 2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50
<표 23>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52
<표 24>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53
<표 25>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54
<표 26>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55
<표 27> 온정·격려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57
<표 28>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58
<표 29> 과보호·허용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60
<표 30>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61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모형	24
[그림 2] 온정·격려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57
[그림 3] 과보호·허용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60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

김 정 은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고 관 우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의 관계를 분석하고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어머니의 역할이 보호자에서 보육자로 전환되는 시기의 주요 돌봄아동 인, 5세에서 10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23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 29.0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분석방법은 신뢰도검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검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절차에 따른 위계적회귀분석과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어머니 집단의 온정·격려 및 한계설정 양육행동 수준이 높고, 과보호·허용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 수준이 낮았으며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 또한 높게 나타났다. 아동권리협약의 인지여부는 온정·격려 양육행동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온정·격려 및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은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효능감과 아동

권리인식은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 수준을 높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은, 온정·격려 양육행동에서 부분매개 하였고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는 완전매개 하였으며 한계설정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 실천하는데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검증하였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아동권리인식을 매개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수준을 높이고, 양육효능감이 낮더라도 아동권리인식을 매개로 부정적인 양육행동 수준이 낮아짐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실천을 위해서는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을 높여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가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을 높이는 의미 있는 요인이므로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서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부모교육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이끄는 선행요인을 제시하여 어머니들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지향하고 실천하도록 돕고, 부모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권리증진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어머니,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아동권리인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 돌봄 공백, 핵가족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부모의 관심과 열정은 높다. 이러한 관심은 TV 속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부모들이 양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양육은 부모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안지영, 2001). 또한 홍수처럼 쏟아지는 육아정보 속에서 자녀발달에 적합한 정보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문제가 생기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유빛나, 2008).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행동, 습관,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가 내면화하고 있는 가치와 태도, 행동 등이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있어 부모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가장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이다(윤희진·민혜영, 2006). 이 중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동의 지적·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신윤옥, 200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애정적인 태도는 아동의 정서 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신윤옥, 2007), 어머니의 적극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사

회행동에 대한 모델이 되어줌으로써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고,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탐색할 때 자신감 있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박두미, 2005). 따라서 양육행동 연구에서 있어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애 첫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인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아기 아동과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아동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역할은 보호자에서 보육자로 전환되는 시기이자 학습자의 역할이 본격화되며 자아개념 발달의 촉진자,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의 조력자, 격려자로서의 역할(이혜원, 2006)이 요구되므로 어머니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어머니가 되지만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행동에도 옳고 그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연구들과 더불어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최근의 연구동향은 양육행동과 자녀 발달 간의 일차적인 관계만을 다루기보다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아동권리인식, 인권감수성 등 부모의 심리적·인지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김은숙, 2010; 김반디,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중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정은희, 2015), 양육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양육에 적용한 것으로 효율적으로 자녀양육을 완수해 내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과(Teti & Gelfand, 1991), 부모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자녀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지각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ondell과 Tyler(1981)는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문제발생상황에 있어 적절한 도움을 주며 융통성 있고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지각된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강조하고, 자녀양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녀를 격려하는 행동을 보이며(안지영·박성연, 2002),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물론 자녀양육에 더 민감하게 참여한다고(최형성·최옥분, 2001) 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선행요인이자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주요한 예측변인이며(Coleman & Karraker, 1997), 양육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현은강, 1994).

한편 아동기는 성장과 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아동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면 향후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인 시기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세이브더칠드런, 2009). 따라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느냐 혹은 침해되느냐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로 귀결된다(조명자·이서영, 2016). 아동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부여받은 자격으로 1991년 우리나라가 협약을 비준한 이후 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법제처, 2023). 그러나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은 협약 비준을 통해 신장되기보다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아동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세상의 관심을 받아왔다.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사건의 83.7%는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어머니는 36.6%이다. 또한 피해 아동 사망사건의 학대 행위자는 77.8%가 친부모이며 이 중 어머니는 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22). 이는 아동과 가장 가까운 부모, 특히 어머니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은주, 2012). 즉 부모는 아동의 성장뿐만 아니라 권리보장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아동권리협약 제18조에서도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부모가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법제처, 2023). 그러나 부모들은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아동들은 권리를 거의 누리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신지현, 2004). 이를 통해 아동의 생애 중 제일 먼저 만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의 아동 권리 존중을 위한 실천은 여전히 미비하고 할 수 있다(김경인, 2020).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 스스로 자유롭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제공·보

호·참여의 3원칙과 내용적 측면에 있어 유사점을 가진다(이재연, 1997).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의 권리를 실천하는 행동 특성을 가지며,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는 일관성 없는 권위적·독재적 태도를 지니며 체벌이나 심리적 통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에 반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이은주, 2012). 또한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어머니들은 스스로 아동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자신감이 있으며, 아동의 학습을 잘 도울 수 있고 아동의 행동을 잘 지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수정, 2017). 따라서 양육행동의 선행요인으로써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연구는 1997년 이재연과 강성희가 진행한 초·중·고등학생의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조사이다. 그 후 약 25년 동안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인식에서 부모, 교사 등으로 연구대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동과 관련된 다른 주제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며 이마저도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나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이은주, 2012; 신영금, 2017; 이수정, 2017). 지금까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행된 아동권리인식 관련 연구들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아동권리인식 조사 연구(신지현, 2004), 부모의 아동권리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은주, 2012),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과 인권감수성이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신영금, 2017), 부모의 인권감수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현은주·이보영, 2020) 등이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아동권리인식 수준에 대한 조사가 중심이며 아동권리인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주제로 삼은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양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구성해나가는 상호작용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부모자녀 모두에게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초가 된다(김경인,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봄의 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호자에서 보육자로서의 역할로 전환되는 6세부터 10세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아동권리인식, 양육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 양육효능감 및 아동권리인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끄는 선행요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들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지향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권리증진을 돕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아동권리인식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에 매개하는 변인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아동권리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가설 1-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아동권리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은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은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은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은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있어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3-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있어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있어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있어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있어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정의

1)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이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행동 및 태도로써 어머니가 자녀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하며, 어떻게 돌보는 지에 대한 행동(서기남·문혁준, 2009)을 의미하며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의 네 가지 양육행동 유형으로 구분한다(박주희, 2000).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이란 자녀를 바람직하게 키울 것이라는 양육행동과 능력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믿음과 기대로써,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최형성·정옥분, 2001).

3) 아동권리인식

아동권리인식이란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동권리 내용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내용을 토대로 구분한다(신영금, 2017).

II. 이론적 배경

1. 양육행동

1) 양육행동의 개념

부모는 아동에게 중요한 양육환경이며 부모가 보이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노연수, 2015). 특히 어머니는 아동이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워 나가며 성장하는 동안 주 양육자로서 중요한 상호작용 대상자이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취하는 행동은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김세현, 2011). 또한 그 영향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 즉 아동 발달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육성환, 2019).

이처럼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개념정의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람(2008)의 연구에서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전반적으로 보이는 태도 및 행동으로 훈육, 생활훈련, 유아의 행위에 대한 태도라고 양육행동을 개념화 하였으며, 정은희(2015)의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의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재학(2018)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가르치는 태도로써 자녀양육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포괄적인 행동양식이라고 양육행동을 정의하였으며, 김순옥(2002)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보편적,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내현적 행동 및 태도라고 하였다. 이처럼 양육행동의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지만 보편적으로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지니는 신념과 가치의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은희, 2015). 이송이(2006)의 연구에서는 신념과 행동을 구분하여 부모의 내적신념을 양육태도라고 정의하고,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보편적인 행동은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양육신념은 양육행동에 반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행동 및 태도로써 어머니가 자녀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하며, 어떻게 돌보는 지에 대한 행동(서기남·문혁준, 2009)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양육행동의 유형

양육행동유형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Symonds(1949)는 과보호적, 우세적, 거부적, 복종적 네 가지 유형으로 양육행동을 분류하고 부모의 애정을 받고 자란 집단을 수용-거부, 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한 집단을 지배-복종의 두 차원으로 나누었다. Symonds(1949)는 양육행동을 체계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태도에 대한 언급 없이 양육자의 부정적인 태도에 초점을 두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박경서, 2012). 이후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Schaefer(1959)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정상적인 양육태도에 대해 30년 간 장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애정-적대와 자율-통제라는 양육행동유형을 제시하였다(홍미라, 2012; 노연수, 2015). Schaefer(1959)가 구축한 양육유형은 두 개의 직교 차원으로 구성된 네 가지 양육태도이며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로 나뉜다. 애정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자신의 갈등에 따라 자녀를 대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자녀와 밀착된 관계가 형성된 것을 말한다(권영아, 2002; 전해진, 2009). 거부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애정이 결핍되어 있고 자녀의 성장, 발달에 무관심하며 칭찬도 별도 주지 않는 상태로 가끔 자녀를 비난하거나 학대하며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의 욕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는 것을 말한다(박정연, 2009). 자율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독립심을 인정하고 민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최경옥, 2004). 통제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규칙을 정하며, 이를 어길 시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자녀의 독립적 행동에 좌절감을 느끼는 등 지배적인 양육행동을 말한다(허은, 2014).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박성연과 이숙(1990)은 양육행동을 애정, 합리적 지도, 적극적 참여, 성취,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일관성 있는 규제 7개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박영애(1995)는 Schaefer(1959)의 두 차원인 애정-적대와 자율-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추가된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자녀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거나, 굴복하여 허용하거나 무책임·무관심한 방임의 행동을 포함한다. 이후 이선희(2012)는 논리적 설명, 온정, 개입, 방임, 강압의 5가지 유형으로 양육행동을 구분하였다. 온정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친밀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하며, 논리적 설명은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기준에 대해 논리적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다. 개입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 항상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양육자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때 꾸짖으며, 강압적 행동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벌이나 신체적 처벌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방임적 양육행동은 자녀발달에 무관심한 태도로 자녀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고 훈육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행동이다(이선희, 2012). 이처럼 양육행동에 대한 유형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요인들의 의미는 크게 애정, 온정, 수용, 논리적 설명, 합리적 제한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통제, 적대, 거부 등의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손승희, 2001).

본 연구에서는 박주희(2000)가 구성한 4개 차원의 유형을 채택하였다. 박주희(2000) 국내외 선행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요 양육차원이라고 지적해온 온정·수용, 거부, 자율, 통제 차원 이외에 과보호와 비일관성에 관한 태도를 포함시켜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 4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온정·격려’ 로써 아동에 대한 수용, 애정 표현, 필요한 도움의 제공, 칭찬과 격려와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한계설정’ 으로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정해 지키도록 설명하며,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은 ‘과보호·허용’ 으로 아동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거나 아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한계의 부재를 나타내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네 번째 요인은 ‘거부·방임’ 으로써 아동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화를 내며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행동,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행동을 뜻한다.

2. 양육효능감

1) 양육효능감의 개념

양육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파생된 것으로 자기효능감을 자녀 양육에 적용한 것이다(신숙재, 1997). 따라서 양육효능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에 대해 ‘개인이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며 각 개인은 각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자기체계(self system)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자기체계는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조절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인간의 행동과 그 행동의 동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수정, 2017).

효능감이 양육의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말과 199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그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은 ‘양육확신감’, ‘양육신념’, ‘양육유능감’ 등의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김정아, 2010)되었으며 학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에 따라 그 개념들이 조금씩 달리 설명된다. Bandura(1986)는 양육효능감에 대해 ‘자녀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역할 수행 능력을 신뢰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Teti와 Gelfand(1991)는 ‘부모로서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효과적인 양육 수행 정도에 대한 부모의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Johnston과 Mash(1989)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느끼게 되는 자신감의 정도, 양육 기술 및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라고 하였다. 또한 Goodnow와 Collins(1990)은 ‘자녀와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를 잘 해결 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과 믿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Coleman과 Karraker(2003)은 ‘자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각하는 부모의 평가’라고 양육효능감을 정의하며 자신의 양육 능력에 관한 확신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육행동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국내학자들도 양육효능감에 대해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최형성과 정옥분(2001)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신념’ 으로 보았으며 안지영(2001)은 ‘부모역할에 적응을 돕고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을 잘 관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양육태도의 근원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격적 특성’ 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성연과 백종화(2002)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의 정도’ 라고 하였으며 정미현(2011)은 ‘자녀양육 상황에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 또는 양육 상황에서의 과제들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기술’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의를 종합해 ‘자녀를 바람직하게 키울 것이라는 양육행동과 능력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믿음과 기대’ 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양육효능감의 유형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인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은 ‘자녀돌봄, 양육에 있어서의 전문지식과 기술보유, 전반적인 효능감’ 3가지 요인으로 양육효능감을 구성하였고 Teti와 Gelfand(1991)는 ‘전반적인 양육자신감 갖기, 자녀가 원하는 것 이해하기, 자녀를 즐겁게 해주기, 자녀 칭찬하기, 자녀와의 상호작용, 자녀에게 엄마가 바라는 것 이해시키기, 자녀가 좋아하는 것 알기, 자녀로부터 분리되기, 자녀 달래기, 일상적인 가사 참여하기’ 의 10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Allen(1993)은 ‘사랑, 통제, 의사소통, 교육, 전반적인 효능감’ 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Coleman과 Karraker(2000)는 ‘학업성취, 사회적 기술 증진, 건강, 훈육, 정서적인 지원’ 의 5가지 요인을 포함시켰다. 또한 Kendall과 Bloomfield(2005)는 ‘정서, 자기수용, 학습, 놀이이해, 스트레스, 훈육’ 을 양육효능감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연구 또한 척도개발 연구를 통해 양육효능감의 요인을 구성하였는데, 신숙재(1997)의 연구는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바탕으로 ‘인지적 차원의 부모로서의 효능감, 정서적 차원의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로 하위요인을 구분하였다. 최형성과 정옥분(2001)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도록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 능력,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5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Allen(1993)에 의해 제시된 양육효능감의 요인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요인순서의 차이와 더불어 Allen의 애정요인은 최형성과 정옥분의 연구에는 없었으며, 최형성과 정옥분의 연구에 제시된 건강과 관련된 요인인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Allen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차이는 동양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어졌다(최형성·정옥분, 2001). 조영숙과 이양희(2007)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으로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의사소통능력, 교육, 통제’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성지현과 백지희(2011)는 Meunier과 Roskam(2009)의 양육효능감 척도(EGSCP)를 수정하여 개발한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에서 ‘애정, 교육, 훈육, 책임, 놀이, 통제, 일상체계 조직’의 7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박성환(2012)은 ‘양육기술, 긍정적 양육노력, 양육자신감, 학습코칭능력, 양육관리능력’ 5개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인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개념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의사소통능력, 교육능력, 자녀 통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하위영역으로 측정되었던 양육효능감이 독립된 척도로 점차 나머지 하위요인들을 포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애정,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양육효능감 척도에서의 하위요인인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의 요인을 채택하고자 한다.

3. 아동권리인식

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의 권리는 18세 미만 아동의 인권을 말한다.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로써 박탈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이재연 외, 2018). 인간의 권리는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인간존엄성사상을 근거로 하며, 아동의 권리 또한 출생과 더불어 누리는 권리의 천부성과 보편성에 근거한다(김정래, 2002). 그러나 아동은 발달특성상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고, 투표권도 없으며, 소외되거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성인처럼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아동은 전통적으로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였다(이재연 외, 2008). 아동이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여서 타인의 양육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동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수용자는 아니다(이재연 외, 2018).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라는 특수성에 맞추어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도해야 한다. 즉 아동에게 있어 권리는 성인에게 주어지는 권리 그대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권과 발달권이 부가되어야 한다(이순형, 2001). 따라서 아동의 권리란 힘으로써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당하게 보장 받고, 동시에 아동 자신이 그것을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이혜원, 2006).

아동의 권리는 아동 자신이 그것을 행사하는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로 구분된다. 수동적 권리는 아동의 발달 특성으로 부모와 다른 성인, 지역사회, 국가 등이 아동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양육주체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수동적 권리에선 학대, 빈곤, 노동력 착취,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과거 아동권리의 보장은 수동적 권리보장이 대부분이었다. 능동적 권리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

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하며 삶의 방법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늘날 아동권리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수동적 권리를 기반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능동적 권리보장이 요구되며, 능동적 권리에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보장 등이 있다(오미희 외, 2020).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수단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힘이다(이혜원, 2006). 아동의 권리 또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그 준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공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채택된 국제사회의 최초의 협약으로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등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이재연 외, 2018).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이듬해 9월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 해왔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사회, 문화, 시민, 경제,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아동과 관련된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 할 수 있다(신영금, 201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국가는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단순한 도덕적 차원이 아닌 법적 의무로 이행할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오미희 외, 2020).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세이브더칠드런, 2007). 즉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가정 뿐 만 아니라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학교 등을 망라한 모두의 책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당사국은 총54개 조항과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법률적, 행정적, 그리고 기타 방법들을 동원해야한다(이혜원, 2006).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과 유형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총 54개의 조항,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41개의 조항으로 아동의 정의를 포함한 일반원칙과 이행방법 등 구체적인 아동 권리와 당사국의 아동보호 의무규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부는 3개 조항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실천의무를, 제3부는 9개 조항으로 협약의 비준 절차 등 부칙으로 구성되었다(오미희 외, 2020).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을 이루는 가치를 일반원칙이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본원칙은 ‘무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등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고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아동이 보호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두 번째 기본원칙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아동에 관한 모든 정책과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말한다. 세 번째 기본원칙은 아동의 ‘생존 · 보호 · 발달의 원칙’으로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환경을 보장해야 함을 말한다. 네 번째 기본원칙인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들은 아동의 관점에서 고려되고, 결정함에 있어 아동 자신의 직접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이혜원, 2006).

일반원칙 네 가지 가운데 무차별 · 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은 사실 한 가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래, 2002). 차별금지에는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고, 아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 원칙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아동은 더 이상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 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아 성인과 함께 결정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이혜원, 2006).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권리는 보호대상으로서 누리는 소극적 권리와 동시에 권리의 주체자로서 가지는 적극적 권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권리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제공(provision)받고 사용할 권리, 위험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protection)받을 권리,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

(participation)할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아동권리의 3P 개념에 근거하여, Save the Children(1999)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부의 제6조부터 제40조에 걸쳐 규정된 아동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이혜원, 2006).

첫 번째 생존권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과 의료적 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과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로써 관련 조항은 제6조, 7조, 8조, 9조, 20조, 21조, 23조, 24조, 26조, 27조, 30조, 32조, 33조, 34조, 35조, 38조에 해당한다.

두 번째 보호권은 차별로부터의 보호,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위기상황(난민아동, 소수민족아동 등)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응급 상황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한다.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차별, 폭력, 약물과 성폭력, 고문,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등 아동에게 위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써 관련조항은 제2조, 7조, 10조, 11조, 16조, 19조, 20조, 21조, 23조, 25조,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37조, 39조, 40조 이다.

세 번째 발달권은 정규직, 비정규적인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권리, 여가문화를 즐길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등으로 관련조항은 제5조, 6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7조, 24조, 28조, 29조, 32조 이다.

네 번째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하여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의미한다. 즉 자신의 나라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관련조항은 제12조, 13조, 15조, 17조, 18조이다.

이 네 가지 권리는 상호의존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권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이재연·황옥경·김효진, 2009).

3) 아동권리인식의 중요성

아동권리인식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양육자 그리고 성인 즉 의무이행자들이 아동권리 내용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한다(신영금, 2017). 따라서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 부족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모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경우 ‘자녀살해 후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현정(2012)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오랜 유교적 전통에 기인한 일종의 부모-가족 일체형 인식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를 대하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아동은 일생동안 가장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와 유대형성은 물론 아동의 개성과 능력성장을 존중하는 양육방식, 보살핌, 지도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즉 아동기에 직면하는 발달과업, 특별한 이익, 경험 및 도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동권리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황옥경, 2012). 또한 아동기에 아동권리가 존중 받게 되면 청소년기 동안의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어려움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며(국가인권위원회, 2006), 반대로 아동권리존중이 가정에서 지켜지지 못할 경우 가정 밖에서 아동이 권리를 침해받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당연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최학진, 2007).

Kohlberg(1981)은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해 무엇이 정의로운지 평가해야 하는 딜레마로 정의하며, 도덕적으로 심사숙고하고 합리적 논쟁과 원리적 추론을 통해서 해결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권리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양육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 할 수 있는 ‘인지적 판단 능력’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아동의 권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여 비폭력적이고 비차별적인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유빛나, 2018).

4. 선행연구고찰

1)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은 양육자의 성격 및 정서 상태, 가치관, 신념, 인지적 요인 등이 반영되며, 가족의 분위기, 사회적 지위와 배경 등에 영향을 받는다(오남희, 2008). 그 중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개인 신념에 대한 인지적 요인으로 양육행동의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머니의 인지와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미정·이경님, 2011; 한은지, 2020).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양육행동의 개인 차이를 야기하는데(문혁준, 2005),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 일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행동을 보이고 문제상황에서 더 적절한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인다(문혁준, 1999; 조경희, 2015; 정은희, 2015). 또 높은 양육효능감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적게 느껴 주어진 양육행동을 지속하려는 특징을 보이며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녀의 자울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안지영, 2001). 반면에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문혁준, 2005), 자녀의 요구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녀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여(김상미, 2011) 양육에 대한 무력감을 야기하게 되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문태형, 2002).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 일수록 자신 스스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며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지각한다(Dumka et al., 1996).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게 강압적이나 무기력한 양육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자기능력에 대한 회의감으로 자녀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Teti & Gelfand, 1991; Coleman & Karraker, 1997; 장성오·김용미, 2011).

이를 통해 높은 양육효능감은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상황에서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게 하며 양육행동의 성공적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양육효

능감은 양육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Mondell & Tyler, 1981) 양육의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Teti & Gelfand, 1991)이므로 어머니 스스로가 부모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는 것은 양육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윤서희·성지현, 2014). 이에 양육 상황에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 주요한 선행요인이므로 건강한 양육행동의 방안을 위한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양육행동과 아동권리인식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조항을 살펴보면, 권리를 가진 아동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제7조), 아동의 최대한의 발달과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부모의 책임과 아동의 권리(제5조, 제18조)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아동권리존중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정도는 양육자로서 행동하게 하는 신념, 가치관, 아동관에 영향을 주고 이는 양육행동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아동을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의 기준이 된다(김경인, 2020).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는 다음의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Hamner & Turner, 1996; 박경자, 2004; 이혜원, 2006). 첫 번째는 자녀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아동권리의 네 가지 유형 중 생존권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 아동이 살아갈 안전한 장소, 적절한 음식과 영양, 의복, 신체적·심리적 건강유지 등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야 함을 말한다. 두 번째 자녀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보호권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자녀를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녀에게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녀의 자발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에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녀발달을 위한 안내와 지원의 기능으로 발달권과 관계가 있다.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인지적·정신적·사회적·도덕적·문화적·교육적 발달을 지원할 의

무와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고, 한계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중요한 행동과 가치들의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최대한의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 네 번째는 참여와 협력의 기능으로 참여권과 관련이 있다.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체계와 연계하여 자녀가 권리주체자로서 자발성과 자립이 함께 성취되도록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부모의 역할 및 기능과 아동권리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육행동과 아동권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은주(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높게 인식할수록 양육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으며, 안사라(2012)는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양육태도와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양순경(2012)의 연구에서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부모는 아동권리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통제적 양육행동의 부모는 아동권리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허은(2014)은 아버지 대상의 연구에서 아동권리인식과 양육태도 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부적인 양육태도와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덜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권리는 일회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이 아니므로 자녀의 일상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김경인, 2020). 어머니로부터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존중받으며 성장한 아동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문정연, 2016). 즉 권리를 존중받은 아동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아동기에 형성된 발달 양상은 이후 성장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권영임, 2011).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 아동권리인식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3)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부모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인 연령, 학력, 취업유무, 스트레스, 양육경험 등이 있으며 자녀의 기질, 자녀의 성별과 같은 자녀관련 특성, 배우자와의 친밀감이나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송미혜, 2006). 이처럼 다양한 변인들 중 양육자의 아동권리인식은 최근에서야 양육효능감과 그 관계가 연구되고 있다. 이수정(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은주와 이보영(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인식이 양육효능감을 높이는데 더욱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혔다. 이들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이 높을수록 아동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기본적으로 아동을 차별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이수정, 2017; 현은주·이보영, 2020). 또한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의 적응 수준이 높아지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와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하였다(이수정, 2017).

이수정(2017)은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아동권리협약 내용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 번째,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능력이나 지식, 행동을 의미하는 ‘전반적인 양육능력’은 아동권리협약 중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는 생활수준 유지, 아동을 사랑으로 돌보는 양육제공, 아동만의 장소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생활권과 아동의 권리를 책임 있는 사람이 존중해 주는 권리보장 등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건강한 양육능력’은 자녀의 심신과 관련된 것으로 아동권리협약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서비스 등의 아동권리 내용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의사소통능력’은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수용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아동의 생각을 중요하게 다루는 아동의 의사반영, 아동과 관계된 일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사존중 등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 네 번째, 학습지도능력과 훈육능력은 각각 자녀의 학습을 돕는 능력과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교정하

는 능력에 대한 것으로 아동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발달권, 아동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기회를 가지는 교육받을 권리 등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아동권리인식이 높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김숙자·김현정, 2008)으로 양육자의 가치는 양육상황에서의 인지적 판단의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육 상황의 인지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아동권리인식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육자의 인지적 요인인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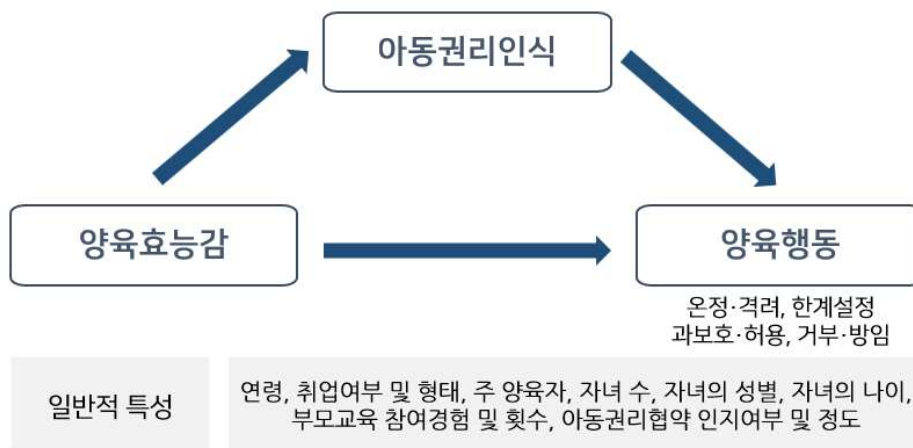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아동기 시기 중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주요 돌봄대상 인 5세부터 10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집은 비확률표집 중 편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한국리서치 패널 및 눈덩이표집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보고식 기입방법의 웹 조사를 통해 323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집 된 323명의 자료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양육행동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양육효능감 및 아동권리인식의 영향력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경향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설문지는 총 102문항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척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 중 응답자의 나이, 취업여부 및 형태, 주 양육자, 자녀의 수, 부모교육 참여경험 및 횟수, 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 및 정도는 집단 간 비교,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위해 재 코딩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변인	구성	문항수
종속 변수	양육행동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	18
독립 변수	양육효능감 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 훈육능력	34
매개 변수	아동권리인식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40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나이, 취업여부 및 형태, 주 양육자 구분, 자녀의 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나이,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	10
전체		102

1)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주희(2001)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격려(11문항), 한계설정(8문항), 거부·방임(8문항), 과보호·허용(7문항)에 대한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첫 번째, ‘온정·격려’로써 아동에 대한 수용, 애정표현, 필요한 도움 제공, 칭찬과 격려 등과 같은 긍정적 행동을 의미하며 두 번째 요인은 ‘한계설정’으로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정해 지키도록 설명하며,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은 ‘과보호·허용’으로 아동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거나 아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부재를 나타내는 양육행동을 의미하며, 네 번째 요인은 ‘거부·방임’으로 아동을 수용하지 못하는 행동, 화를 내거나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행동,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행동을 뜻한다.

본 척도는 각 문항에 나타난 양육행동의 빈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어지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녀를 양육할 때 해당 행동 특성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박주희(2001)의 연구에서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63 ~ .8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온정·격려 .844, 한계설정 .708, 과보호·허용 .695, 거부·방임 .800 으로 나타났다.

<표 2>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i>Cronbach's α</i>	
			선행연구	본연구
온정·격려	1, 3, 7, 8, 11, 13, 20, 25, 27, 29, 32	11	.83	.844
한계설정	2, 5, 15, 23, 24, 26, 28, 34	8	.74	.708
과보호·허용	4, 9, 12, 16, 19, 22, 30	7	.63	.695
거부·방임	6, 10, 14, 17, 18, 21, 31, 33	8	.69	.800

2)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영성과 정옥분(2001)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이승미(2004)가 수정·보완하고 배전호(2010), 한은지(2020) 등이 활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최영성과 정옥분(2001)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척도를 개발하였으나, 초등 자녀 뿐 만 아니라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데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양육효능감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전반적인 양육능력’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능력이나 지식, 행동 등을 측정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자녀의 심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수용과 자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며, ‘학습지도능력’과 ‘훈육능력’은 각각 자녀의 지적 학습과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에 대한 것이다.

본 척도는 5단계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어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의 합인 양육효능감 전체를 활용하였다.

한은지(2020)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8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842,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679, 의사소통능력 .802, 학습지도 .753, 훈육능력 .678이며,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2이다.

<표 3> 양육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i>Cronbach's α</i>	
			선행연구	본연구
전반적인 양육능력	1, 6, 11, 16, 17, 18	6	.836	.842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2, 7, 12	3	.678	.679
의사소통능력	3, 8, 13	3	.744	.802
학습지도	4, 9, 14	3	.722	.753
훈육능력	5, 10, 15	3	.697	.678
전체		18	.918	.912

3) 아동권리인식

본 척도는 부모의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측정도구로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Hart & Zeidner(1993)가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 Early Findings of a Cross National Project」에서 개발한 문항들을 기초로 하여 국내에서 이재연·강성희(1997)가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허은(2014), 신영금(2017)이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40문항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의미하며, ‘보호권’은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은 아동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며, ‘참여권’은 아동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권리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권리의 합인 아동권리인식 전체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신영금(201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생존권 .855, 보호권 .888, 발달권 .896, 참여권 .896 이며,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69이다.

<표 4> 아동권리인식 척도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i>Cronbach's α</i>	
			선행연구	본연구
생존권	1, 6, 7, 9, 18, 20, 21, 23, 25, 35	10	.74	.855
보호권	2, 3, 4, 11, 22, 30, 32, 34, 40	9	.79	.888
발달권	10, 14, 16, 17, 19, 26, 28, 31, 33, 36, 39	11	.86	.896
참여권	5, 8, 12, 13, 15, 24, 27, 29, 37, 38	10	.88	.916
전체		40	.95	.969

4. 자료의 분석

수립된 자료는 SPS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어머니 나이, 어머니 취업 여부 및 형태, 자녀 수, 부모교육 경험, 아동권리협약 인지, 아동의 성별, 아동의 나이)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아동권리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의 사후분석의 경우 등분산이 가정할 때는 Scheffe,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을 때는 Dunnett's T3을 활용하였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아동권리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방법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대상의 연령분포는 39세 이하가 153명(47.4%), 40세 이상이 170명(52.6%)이며 평균연령은 39.3(SD=4.74)세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취업여부 및 형태는 전업주부가 140명(43.3%), 종일제 취업 115명(35.6%), 파트타임 및 유연근무 68명(21.1%)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주 양육자는 어머니(본인) 276명(85.4%), 어머니(본인)외 가족이 47명(14.6%)이다. 자녀의 수는 2명이 161명(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 119명(36.8%), 3명 이상 43명(13.3%)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 151명(46.7%), 여자 172명(53.3%)이었으며, 자녀의 나이는 5세 51명(15.8%), 6세 57명(17.6%), 7세 55명(17.0%), 8세 55명(17.0%), 9세 50명(15.5%), 10세 55명(17.0%)이다.

<표 5>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23,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어머니의 연령	39세 이하	47.4
	40세 이상	52.6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형태	종일제 취업	35.6
	파트타임 및 유연근무	21.1
	전업주부	43.3
가정 내 주 양육자	어머니(본인)	85.4
	어머니(본인) 외 가족	14.6
자녀 수	1명	36.8
	2명	49.8
	3명 이상	13.3
자녀의 성별	남자	46.7
	여자	53.3
자녀의 나이	5세	15.8
	6세	17.6
	7세	17.0
	8세	17.0
	9세	15.5
	10세	17.0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중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대한 분포는 <표 6>과 같다. 먼저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 대상자는 199명(61.6%)이며,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24명(38.4%)이다. 부모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 199명의 부모교육 참여횟수는 3회 이상 96명(48.2%), 2회 57명(28.6%), 1회 46명(23.1%) 순이다. 아동권리협약을 ‘안다’ 고 응답한 연구대상자는 137명(42.45%), ‘모른다’ 는 186명(57.6%)이며, 아동권리협약을 안다고 응답한 137명 중 ‘제목만 알고 내용은 잘 모른다’ 40명(29.2%), ‘제목과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다’ 90명(65.7%), ‘제목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다’ 7명(5.1%)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 대상자의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부모교육 참여경험	있다	199	61.6
	없다	124	38.4
	전체	323	100.0
부모교육 참여자의 교육 횟수	1회	46	23.1
	2회	57	28.6
	3회 이상	96	48.2
	전체	199	100.0
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	안다	137	42.4
	모른다	186	57.6
	전체	323	100.0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	잘 모른다	40	29.2
	대략적으로 안다	90	65.7
	구체적으로 안다	7	5.1
	전체	137	100.0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온정·격려 3.96점(SD=.47), 한계설정 3.69점(SD=.53), 과보호·허용 2.28점(SD=.53), 거부·방임 2.70점(SD=.61)으로 나타났다. 온정·격려의 양육행동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과보호·허용의 양육행동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표 7> 양육행동의 기술통계

(N=323)					
변수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양육 행동	온정·격려	2.91	5.00	3.96	.47
	한계설정	2.13	5.00	3.69	.53
	과보호·허용	1.14	4.14	2.28	.53
	거부·방임	1.00	4.38	2.70	.6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3.73점(SD=.5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3.39점(SD=.62),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97점(SD=.58), 의사소통능력 4.06점(SD=.61), 학습지도 3.76점(SD=.65), 훈육능력 4.02점(SD=.55)으로 나타났다.

<표 8> 양육효능감의 기술통계

(N=323)

변수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양육 효능감	전반적인 양육능력	1.67	5.00	3.39	.62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1.67	5.00	3.97	.58
	의사소통능력	2.00	5.00	4.06	.61
	학습지도	1.67	5.00	3.76	.65
	훈육능력	2.67	5.00	4.02	.55
전체		2.29	5.00	3.73	.50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의 전체평균은 4.53점(SD=.50)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생존권 4.52점(SD=.42), 보호권 4.60점(SD=.47), 발달권 4.50점(SD=.49), 참여권 4.52점(SD=.50)으로 나타났다.

<표 9> 아동권리인식의 기술통계

(N=323)

변수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아동 권리 인식	생존권	2.70	5.00	4.52	.42
	보호권	2.75	5.00	4.60	.47
	발달권	2.73	5.00	4.50	.49
	참여권	2.70	5.00	4.52	.50
전체		2.85	5.00	4.53	.44

3.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차이는 <표 10>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및 형태, 가정 내 주 양육자, 자녀 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나이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차이

(N=323)						
구분	N	M(SD)	t/F	p	사후분석	
연령대	39세 이하	153	3.99(.47)	.960	.338	-
	40세 이상	170	3.94(.47)			
취업여부 및 형태	종일제 취업	115	4.01(.46)	.735	.481	-
	파트타임 및 유연근무	68	3.94(.47)			
	전업주부	140	3.94(.48)			
가정 내 주 양육자	어머니(본인)	276	3.96(.46)	-.450	.653	-
	어머니(본인)외 가족	47	3.99(.54)			
자녀 수	1명	119	3.97(.50)	1.288	.277	-
	2명	161	3.98(.46)			
	3명 이상	43	3.86(.41)			

자녀의 성별	남자	151	3.96(.48)	-.230	.818	-
	여자	175	3.97(.46)			
자녀의 나이	5세	51	3.96(.48)	1.02	.402	-
	6세	57	9.97(.45)			
	7세	55	3.93(.51)			
	8세	55	4.03(.43)			
	9세	50	4.00(.51)			
	10세	55	3.89(.45)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차이는 <표 11>과 같다.

부모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4.03점($SD=.47$), 부모교육 참여경험이 없는 어머니는 3.86점($SD=.4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07$, $p < .01$). 부모교육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교육 횟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3회 이상 4.12점($SD=.48$), 2회 3.94($SD=.42$), 1회 3.94($SD=.46$)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492$, $p < .05$). 다음으로 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는 어머니 집단은 4.08점($SD=.43$), 모르는 어머니 집단은 3.88점($SD=.4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으나($t=3.816$, $p < .001$), 인지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11>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차이

구분		N	M(SD)	t/F	p	사후분석
부모교육 참여경험 (N=323)	있다	199	4.03(.47)	3.07**	.002	-
	없다	124	3.86(.46)			
부모교육 참여자의 교육 횟수 (N=199)	1회	46	3.94(.46)	3.492*	.032	-
	2회	57	3.94(.42)			
	3회 이상	96	4.12(.48)			
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 (N=323)	안다	137	4.08(.43)	3.816**	.001	-
	모른다	186	3.88(.48)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 (N=137)	잘 모른다	40	3.97(.41)	1.801	.169	-
	대략적으로 안다	90	4.12(.45)			
	구체적으로 안다	7	4.19(.32)			

* $p < .05$, ** $p < .01$, *** $p < .001$

(2)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차이는 <표 12>와 같다.

가정 내 주 양육자가 어머니(본인)인 경우 3.61점(SD=.53), 그 외 가족인 경우 3.53점(SD=.50)으로 어머니(본인)이 주 양육자인 경우 한계설정의 양육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226$, $p < .05$). 자녀의 나이에 따른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있어, 5세 3.54점(SD=.46), 6세 3.52점(SD=.52), 7세 3.66점(SD=.57), 8세 3.82점(SD=.50), 9세 3.89점(SD=.52), 10세 3.72점(SD=.5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269$, $p < .001$). 하위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9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 집단이 5세 또는 6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집단 보다 한계설정의 양육행동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어머니의 연령대, 취업여부 및 형태, 자녀 수, 자녀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차이

(N=323)

구분		N	M(SD)	t/F	p	사후분석
연령대	39세 이하	153	3.64(.49)	-1.480	.070	-
	40세 이상	170	3.73(.56)			
취업여부 및 형태	종일제 취업	115	3.61(.52)	2.323	.100	-
	파트타임 및 유연근무	68	3.69(.53)			
	전업주부	140	3.75(.53)			
가정 내 주 양육자	어머니(본인)	276	3.72(.53)	2.226*	.027	-
	어머니(본인)외 가족	47	3.53(.50)			
자녀 수	1명	119	3.63(.54)	3.016	.050	-
	2명	161	3.76(.48)			
	3명 이상	43	3.59(.66)			
자녀의 성별	남자	151	3.71(.53)	.685	.247	-
	여자	175	3.67(.53)			
자녀의 나이	5세 ^a	51	3.54(.46)	4.269***	.000	a<e b<e
	6세 ^b	57	3.52(.52)			
	7세 ^c	55	3.66(.57)			
	8세 ^d	55	3.82(.50)			
	9세 ^e	50	3.89(.52)			
	10세 ^f	55	3.72(.52)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차이는 <표 13>과 같다.

부모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은 3.73점(SD=.53), 없는 집단은 3.63점(SD=.52)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한계설정의 양육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707, p<.05$). 부모교육 참여 횟수에 따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3.206, p<.05$), 1회 3.56점(SD=.57), 2회 3.76점(SD=.51), 3회 이상 3.80점(SD=.52)으로 사후검증 결과 1회 교육을 받은 어머니 집단보다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어머니 집단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는 어머니 집단은 3.75점(SD=.52), 모르는 어머니 집단은 3.64점(SD=.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으나($t=1.769, p<.05$), 인지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13>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차이

구분		N	M(SD)	t/F	p	사후분석
부모교육 참여경험 (N=323)	있다	199	3.73(.53)	1.707*	.044	-
	없다	124	3.63(.52)			
부모교육 참여자의 교육 횟수 (N=199)	1회 ^a	46	3.56(.57)	3.206*	.043	a<c
	2회 ^b	57	3.76(.51)			
	3회 이상 ^c	96	3.80(.52)			
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 (N=323)	안다	137	3.75(.52)	1.769*	.039	-
	모른다	186	3.64(.53)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 (N=137)	잘 모른다	40	3.75(.48)	.009	.992	-
	대략적으로 안다	90	3.75(.54)			
	구체적으로 안다	7	3.73(.52)			

* $p<.05$, ** $p<.01$, *** $p<.001$

(3)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의 차이는 <표 14>와 같다.

어머니의 연령대, 취업여부 및 형태, 가정 내 주 양육자, 자녀 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나이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의 차이

(N=323)						
	구분	N	M(SD)	t/F	p	사후분석
연령대	39세 이하	153	2.31(.51)	.916	.360	-
	40세 이상	170	2.25(.49)			
취업여부 및 형태	종일제 취업	115	2.29(.52)	1.728	.179	-
	파트타임 및 유연근무	68	2.36(.58)			
	전업주부	140	2.22(.51)			
가정 내 주 양육자	어머니(본인)	276	2.28(.53)	-.091	.464	-
	어머니(본인)외 가족	47	2.28(.51)			
자녀 수	1명	119	2.33(.57)	.809	.446	-
	2명	161	2.25(.51)			
	3명 이상	43	2.26(.50)			
자녀의 성별	남자	151	2.28(.53)	.200	.421	-
	여자	175	2.27(.53)			
자녀의 나이	5세	51	2.39(.54)	1.810	.110	-
	6세	57	2.28(.52)			
	7세	55	2.27(.60)			
	8세	55	2.28(.53)			
	9세	50	2.10(.50)			
	10세	55	2.35(.46)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의 차이는 <표 15>와 같다.

부모교육 참여경험 유무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교육 참여 횟수에 따른 차이에서 1회 2.42점(SD=.53), 2회 2.36점(SD=.57), 3회 이상 2.19점(SD=.4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591, p<.05$).

그 외 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 및 인지정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표 15>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의 차이

구분		N	M(SD)	t/F	p	사후분석
부모교육 참여경험 (N=323)	있다	199	2.30(.53)	.761	.447	-
	없다	124	2.25(.54)			
부모교육 참여자의 교육 횟수 (N=199)	1회	46	2.42(.53)	3.591*	.029	-
	2회	57	2.36(.57)			
	3회 이상	96	2.19(.48)			
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 (N=323)	안다	137	2.30(.59)	.652	.515	-
	모른다	186	2.26(.48)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 (N=137)	잘 모른다	40	2.44(.66)	2.158	.120	-
	대략적으로 안다	90	2.26(.55)			
	구체적으로 안다	7	2.02(.59)			

* $p<.05$, ** $p<.01$, *** $p<.001$

(4)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차이는 <표 16>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대, 취업여부 및 형태, 가정 내 주 양육자, 자녀 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나이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차이

(N=323)						
	구분	N	M(SD)	t/F	p	사후분석
연령대	39세 이하	153	2.77(.62)	1.892	.059	-
	40세 이상	170	2.64(.60)			
취업여부 및 형태	종일제 취업	115	2.62(.61)	1.605	.203	-
	파트타임 및 유연근무	68	2.70(.62)			
	전업주부	140	2.76(.61)			
가정 내 주 양육자	어머니(본인)	276	2.72(.60)	1.609	.109	-
	어머니(본인)외 가족	47	2.56(.64)			
자녀 수	1명	119	2.65(.66)	.600	.549	-
	2명	161	2.73(.59)			
	3명 이상	43	2.72(.55)			
자녀의 성별	남자	151	2.72(.62)	.713	.477	-
	여자	175	2.67(.61)			
자녀의 나이	5세	51	2.71(.61)	.393	.854	-
	6세	57	2.74(.58)			
	7세	55	2.74(.74)			
	8세	55	2.73(.56)			
	9세	50	2.61(.66)			
	10세	55	2.65(.51)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차이는 <표 17>과 같다.

부모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은 2.63점(SD=.60), 없는 집단은 2.81점(SD=.6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607, p<.01$).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외 부모교육 참여횟수, 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 및 정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표 17>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차이

구분		N	M(SD)	t/F	p	사후분석
부모교육 참여경험 (N=323)	있다	199	2.63(.60)	-2.607**	.005	-
	없다	124	2.81(.61)			
부모교육 참여자의 교육 횟수 (N=199)	1회	46	2.65(.51)	.186	.830	-
	2회	57	2.66(.62)			
	3회 이상	96	2.60(.64)			
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 (N=323)	안다	137	2.68(.61)	-.544	.587	-
	모른다	186	2.71(.61)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 (N=137)	잘 모른다	40	2.83(.55)	2.058	.132	-
	대략적으로 안다	90	2.63(.64)			
	구체적으로 안다	7	2.44(.44)			

* $p<.05$, ** $p<.01$, *** $p<.001$

2)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표 18>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대, 취업여부 및 형태, 가정 내 주 양육자, 자녀 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나이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N=323)						
	구분	N	M(SD)	t/F	p	사후분석
연령대	39세 이하	153	3.69(.48)	-1.421	.156	-
	40세 이상	170	3.77(.52)			
취업여부 및 형태	종일제 취업	115	3.73(.52)	.753	.472	-
	파트타임 및 유연근무	68	3.79(.53)			
	전업주부	140	3.70(.46)			
가정 내 주 양육자	어머니(본인)	276	3.73(.48)	-.059	.953	-
	어머니(본인)외 가족	47	3.73(.62)			
자녀 수	1명	119	3.73(.54)	1.214	.298	-
	2명	161	3.76(.46)			
	3명 이상	43	3.62(.50)			
자녀의 성별	남자	151	3.72(.54)	-.441	.660	-
	여자	175	3.74(.46)			
자녀의 나이	5세	51	3.64(.47)	.974	.434	-
	6세	57	3.67(.45)			
	7세	55	3.71(.56)			
	8세	55	3.79(.47)			
	9세	50	3.82(.49)			
	10세	55	3.75(.50)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표 19>와 같다.

부모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은 3.82점(SD=.51), 없는 집단은 3.58점(SD=.44)으로 부모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의 양육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356, p<.001$). 부모교육 참여횟수에서는 1회 3.75점(SD=.48), 2회 3.72(SD=.51), 3회 3.92점(SD=.5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630, p<.05$).

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아는 집단은 3.82점(SD=.48), 모르는 집단은 3.66점(SD=.51)으로 아동권리협약을 아는 집단의 양육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791, p<.01$), 인지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19>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구분	N	M(SD)	t/F	p	사후분석
부모교육 참여경험 (N=323)	있다	199	3.82(.51)	4.356***	.000	-
	없다	124	3.58(.44)			
부모교육 참여자의 교육 횟수 (N=323)	1회	46	3.75(.48)	3.630*	.028	-
	2회	57	3.72(.51)			
	3회 이상	96	3.92(.51)			
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 (N=323)	안다	137	3.82(.48)	2.791**	.006	-
	모른다	186	3.66(.51)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 (N=323)	잘 모른다	40	3.72(.52)	1.841	.163	-
	대략적으로 안다	90	3.85(.47)			
	구체적으로 안다	7	4.05(.21)			

* $p<.05$, ** $p<.01$, *** $p<.001$

3)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권리인식의 차이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권리인식의 차이는 <표 20>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대, 취업여부 및 형태, 가정 내 주 양육자, 자녀 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나이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권리인식의 차이

(N=323)						
	구분	N	M(SD)	t/F	p	사후분석
연령대	39세 이하	153	4.53(.47)	-.311	.756	-
	40세 이상	170	4.54(.41)			
취업여부 및 형태	종일제 취업	115	4.51(.48)	.840	.433	-
	파트타임 및 유연근무	68	4.50(.50)			
	전업주부	140	4.57(.38)			
가정 내 주 양육자	어머니(본인)	276	4.53(.44)	-.051	.959	-
	어머니(본인)외 가족	47	4.54(.46)			
자녀 수	1명	119	4.17(.47)	2.886	.057	-
	2명	161	4.59(.42)			
	3명 이상	43	4.50(.43)			
자녀의 성별	남자	151	4.53(.46)	.013	.989	-
	여자	175	4.53(.43)			
자녀의 나이	5세	51	4.46(.55)	1.076	.374	-
	6세	57	4.57(.39)			
	7세	55	4.46(.56)			
	8세	55	4.60(.35)			
	9세	50	4.59(.36)			
	10세	55	4.53(.39)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아동권리인식의 차이는 <표 21>과 같다.

부모교육 참여 횟수에 따른 차이에 있어 1회 4.38점(SD=.58), 2회 4.46점(SD=.44), 3회 이상 4.67점(SD=.2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8.549, $p<.001$), 사후검증 결과 1회와 2회 보다 3회 이상 부모교육을 받은 집단의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모교육 참여경험, 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 및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21> 부모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에 따른 아동권리인식 인식의 차이

구분		N	M(SD)	t/F	p	사후분석
부모교육 참여경험 (N=323)	있다	199	4.54(.43)	.399	.690	-
	없다	124	4.52(.45)			
부모교육 참여자의 교육 횟수 (N=199)	1회 ^a	46	4.38(.58)	8.549***	.000	a,b<c
	2회 ^b	57	4.46(.44)			
	3회 이상 ^c	96	4.67(.29)			
아동권리협약 인지여부 (N=323)	안다	137	4.57(.42)	1.329	.185	-
	모른다	186	4.51(.46)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 (N=137)	잘 모른다	40	4.53(.52)	.961	.385	-
	대략적으로 안다	90	4.58(.37)			
	구체적으로 안다	7	4.77(.25)			

* $p<.05$, ** $p<.01$, *** $p<.001$

4.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아동권리인식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2>와 같다.

먼저 양육효능감과 각 하위요인, 아동권리인식과 각 하위요인을 제외한 모든 상관관계는 .8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상관관계분석에서, 어머니의 나이는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148, p<.01$), 어머니의 주 양육자 여부는 한계설정 양육행동($r=.123,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녀 수 및 자녀의 성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주요 변수는 없었으며 자녀의 나이는 한계설정 양육행동($r=.19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교육 이수횟수는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29, p<.001$). 또한 온정·격려($r=.212, p<.001$) 및 한계설정($r=.148, p<.01$) 양육행동, 양육효능감($r=.268, p<.001$), 아동권리인식($r=.126,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거부·방임 양육행동($r=-.139, p<.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는 온정·격려 양육행동($r=.229, p<.001$) 및 양육효능감($r=.18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양육행동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온정·격려 양육행동은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377, p<.001$), 과보호·허용($r=-.213, p<.001$) 및 거부·방임($r=-.549, p<.001$)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과보호·방임 양육행동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275, p<.001$), 과보호·방임 양육행동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49, p<.001$). 이를 통해 긍정적인 양육행동인 온정·격려 및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인 과보호·허용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양육효능감과 온정·격려($r=.672, p<.001$) 양육행동 및 한계설정($r=.399, p<.001$) 양육행동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과보호·허용($r=-.111, p<.05$) 및 거부·방임($r=-.430, p<.001$) 양육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온정·격려 및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같은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더 보이며, 과보호·허용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인식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권리인식과 온정·격려($r=.428, p<.001$) 양육행동 및 한계설정($r=.233, p<.001$) 양육행동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과보호·허용($r=-.331, p<.001$) 및 거부·방임($r=-.140, p<.05$) 양육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인식이 높을수록 온정·격려 및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며, 과보호·허용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362, p<.001$) 이를 통해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권리인식 또한 함께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22>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N=323)

	1	2	3	4	5	6	7	8	9-1	9-2	9-3	9-4	10	11
1. 어머니 나이	1													
2. 취업유무 ¹⁾	-.029	1												
3. 주양육자 ²⁾	.061	-.290**	1											
4. 자녀 수	.131*	-.159**	.132*	1										
5. 자녀 성별 ³⁾	-.027	-.032	.000	-.026	1									
6. 자녀 나이	.457***	-.052	.147**	.096	-.019	1								
7. 부모교육이수횟수 ⁴⁾	.038	.075	-.040	-.009	-.071	.037	1							
8. 협약인지정도 ⁵⁾	.010	.130*	-.065	-.091	-.004	.017	.329***	1						
9-1. 온정격려	-.022	.048	-.025	-.053	-.013	-.020	.212***	.229***	1					
9-2. 한계설정	.095	-.107	.123*	.024	.038	.197***	.148**	.091	.377***	1				
9-3. 과보호허용	-.103	.091	-.005	-.045	.011	-.060	-.035	-.012	-.213***	-.275***	1			
9-4. 거부방임	-.148**	-.087	.089	.052	.040	-.053	-.139*	-.070	-.549***	-.107	.249***	1		
10. 양육효능감	.090	.053	-.004	-.047	-.025	.100	.268***	.180**	.672***	.399***	-.111*	-.430***	1	
11. 아동권리인식	.081	-.072	-.003	.050	.001	.058	.126*	.092	.428***	.233***	-.331***	-.140*	.362***	1

* $p < .05$, ** $p < .01$, *** $p < .001$

1) 더미취업여부: 전업주부=0, 취업모=1 2) 더미주양육자: 어머니 외=0, 어머니=1 3) 더미자녀성별: 여아=0, 남아=1
 4) (재코딩)부모교육 이수횟수: 0회 ~ 3회 이상 5) (재코딩)협약인지정도: 모른다~자세히 안다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 23>과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33.19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51.5%이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8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양육효능감($t=13.317, p<.001$)과 아동권리인식($t=4.991, p<.001$)은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온정·격려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중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는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을 더 잘 알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3>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N=323)

구분	B	S.E.	β	t	p	VIF	
(상수)	.971	.224		4.337***	.000		
일 반 적 특 성	어머니 나이	-.072	.041	-.076	-1.764	.079	1.208
	취업유무 ¹⁾	.012	.040	.013	.301	.764	1.140
	주양육자 ²⁾	.006	.056	.004	.104	.917	1.123
	자녀 수	-.013	.029	-.018	-.439	.661	1.070
	자녀 성별 ³⁾	.003	.038	.003	.080	.936	1.011
	자녀나이	-.017	.012	-.060	-1.390	.165	1.218
	부모교육이수횟수 ⁴⁾	.000	.016	.001	.019	.985	1.192
	협약 인지정도 ⁵⁾	.051	.021	.100	2.370*	.018	1.156
양육효능감	.551	.041	.587	13.317***	.000	1.252	
아동권리인식	.226	.045	.213	4.991***	.000	1.174	
R ² (adjust R ²)	.515(.500)						
F(p)	33.196***(.000)						
Durbin-Watson	1.787						

* $p < .05$, ** $p < .01$, *** $p < .001$

1) 더미취업여부: 전업주부=0, 취업모=1 2) 더미주양육자: 어머니 외=0, 어머니=1 3) 더미자녀성별: 여아=0, 남아=1 4) 재코딩부모교육이수횟수: 0회~3회이상, 5) 재코딩협약인지정도: 모른다~자세히 안다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 24>와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8.566$,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21.5% 이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8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양육효능감은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6.146, p<.001$). 이는 양육효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한계설정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권리인식은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중 자녀의 나이는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4>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N=323)

구분	B	S. E.	β	t	p	VIF
(상수)	1.584	.321		4.929***	.000	
어머니 나이	-.016	.059	-.015	-.273	.785	1.208
취업유무 ¹⁾	-.1	.058	-.093	-1.734	.084	1.14
일 반 적						
주양육자 ²⁾	.122	.081	.08	1.514	.131	1.123
자녀 수	.002	.041	.003	.054	.957	1.07
특 성						
자녀 성별 ³⁾	.054	.054	.051	1.003	.317	1.011
자녀나이	.046	.017	.145	2.629**	.009	1.218
부모교육이수횟수 ⁴⁾	.02	.023	.047	.856	.393	1.192
협약 인지정도 ⁵⁾	.012	.031	.02	.38	.704	1.156
양육효능감	.366	.059	.345	6.146***	.000	1.252
아동권리인식	.102	.065	.085	1.57	.117	1.174
R ² (adjust R ²)	.215(.190)					
F(p)	8.566***(.000)					
Durbin-Watson	1.784					

* $p<.05$, ** $p<.01$, *** $p<.001$

1)더미취업여부: 전업주부=0, 취업모=1 2)더미주양육자: 어머니 외=0, 어머니=1 3)더미자녀성별: 여아=0, 남아=1 4)재코딩부모교육이수횟수: 0회~3회이상, 5)재코딩협약인지정도: 모른다~자세히 안다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 25>와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4016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1.8%이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103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아동권리인식은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대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5.66, p<.001$). 이는 아동권리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과보호·허용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효능감은 과보호·허용의 양육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5>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N=323)

구분	B	S.E.	β	t	p	VIF
(상수)	4.052	.341		11.897***	.000	
일 반 적						
어머니 나이	-.036	.063	-.034	-.581	.562	1.208
취업유무 ¹⁾	.074	.061	.068	1.202	.23	1.14
주양육자 ²⁾	.035	.085	.023	.406	.685	1.123
자녀 수	-.015	.044	-.019	-.342	.733	1.07
특 성						
자녀 성별 ³⁾	.015	.057	.014	.26	.795	1.011
자녀나이	-.008	.018	-.026	-.447	.655	1.218
부모교육이수횟수 ⁴⁾	.001	.025	.002	.035	.972	1.192
협약 인지정도 ⁵⁾	.004	.033	.007	.115	.908	1.156
양육효능감	.007	.063	.007	.114	.909	1.252
아동권리인식	-.391	.069	-.326	-5.66***	.000	1.174
R ² (adjust R ²)	.118(.089)					
F(p)	4.164***(.000)					
Durbin-Watson	2.103					

* $p<.05$, ** $p<.01$, *** $p<.001$

1)더미취업여부: 전업주부=0, 취업모=1 2)더미주양육자: 어머니 외=0, 어머니=1 3)더미자녀성별: 여아=0, 남아=1 4)재코딩부모교육이수횟수: 0회~3회이상, 5)재코딩협약인지정도: 모른다~자세히 안다

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 26>과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7.92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0.3% 이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96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양육효능감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대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7.45$, $p<.001$). 이는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거부·방임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권리인식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6>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N=323)

구분	B	S.E.	β	t	p	VIF	
(상수)	4.556	.373		12.224***	.000		
일 반 적 특 성	어머니 나이	-.103	.068	-.083	-1.502	.134	1.208
	취업유무 ¹⁾	-.047	.067	-.038	-.698	.485	1.14
	주양육자 ²⁾	.136	.093	.078	1.462	.145	1.123
	자녀 수	.027	.048	.029	.551	.582	1.07
	자녀 성별 ³⁾	.037	.063	.03	.597	.551	1.011
	자녀나이	.002	.02	.007	.122	.903	1.218
	부모교육이수횟수 ⁴⁾	-.011	.027	-.022	-.397	.692	1.192
	협약 인지정도 ⁵⁾	.016	.036	.024	.439	.661	1.156
양육효능감	-.514	.069	-.421	-7.45***	.000	1.252	
아동권리인식	.013	.076	.009	.167	.867	1.174	
R ² (adjust R ²)	.203(.177)						
F(p)	7.926***(.000)						
Durbin-Watson	1.796						

* $p<.05$, ** $p<.01$, *** $p<.001$

1)더미취업여부: 전업주부=0, 취업모=1 2)더미주양육자: 어머니 외=0, 어머니=1 3)더미자녀성별: 여아=0, 남아=1 4)재코딩부모교육이수횟수: 0회~3회이상, 5)재코딩협약인지정도: 모른다~자세히 안다

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1) 온정·격려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27>과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48.294$, $p<.001$), 2단계($F=264.042$, $p<.001$), 3단계($F=154.116$,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 13.1%, 2단계 45.1%, 3단계 49.1%이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39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권리인식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20$, $p<.001$).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권리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72$, $p<.001$). 3단계에서는 아동권리인식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13$, $p<.001$), 양육효능감(2단계 $\beta=.672 \rightarrow$ 3단계 $\beta=.595$)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 양육효능감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권리인식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3단계에서 양육효능감은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권리인식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과 온정·격려 양육행동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부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6.956$,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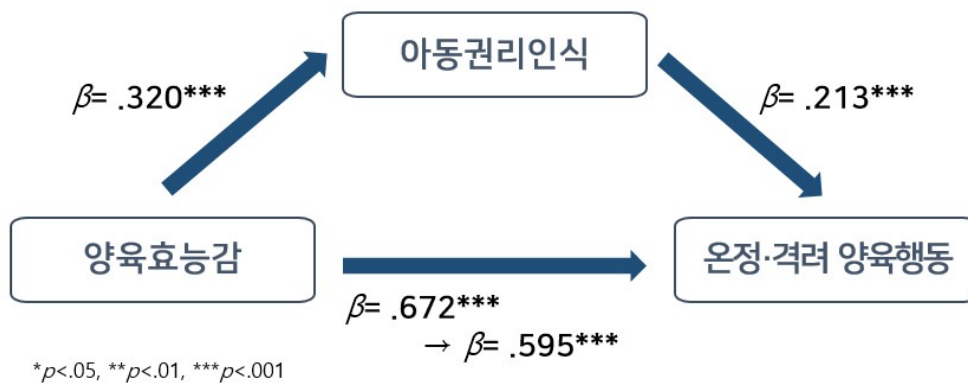
<표 27> 양육효능감과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SE	β	t(p)	R ² (adj.R ²)	F(p)
1	(독립)양육효능감 →(매개)아동권리인식	.320	.046	.320	6.949*** (.000)	.131 (.128)	48.294*** (.000)
2	(독립)양육효능감 →(종속)온정·격려 양육행동	.631	.039	.672	16.249*** (.000)	.451 (.450)	264.042*** (.000)
3	(독립)양육효능감· (매개)아동권리인식 →(종속)온정·격려 양육행동	.559226	.040045	.595213	13.902*** (.000) 4.970*** (.000)	.491 (.487)	154.116*** (.000)

공차=.869, VIF 지수=1.150, Durbin-Watson=1.739

Sobel's test Z = 6.956***

* p<.05, ** p<.01, *** p<.001



[그림 2] 양육효능감과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2)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권리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28>과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48.294, p<.001$), 2단계($F=60.656, p<.001$), 3단계($F=32.297,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 13.1%, 2단계 15.9%, 3단계 16.8%이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0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권리인식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20, p<.001$).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99, p<.001$). 3단계에서는 아동권리인식이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양육효능감이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동권리 인식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28>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S. E.	β	t(p)	R^2 (adj. R^2)	F(p)
1	(독립)양육효능감 →(매개)아동권리인식	.320	.046	.320	6.949*** (.000)	.131 (.128)	48.294*** (.000)
2	(독립)양육효능감 →(중속)한계설정 양육행동	.423	.054	.399	7.788*** (.000)	.159 (.156)	60.656*** (.000)
3	(독립)양육효능감 · (매개)아동권리인식 →(중속)한계설정 양육행동	.384 .122	.058 .066	.362 .102	6.615*** (.000) 1.863 (.063)	.168 (.163)	32.297*** (.000)

공차=.869, VIF 지수=1.150, Durbin-Watson=1.802

* $p<.05$, ** $p<.01$, *** $p<.001$

3) 과보호·허용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29>와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48.294$, $p<.001$), 2단계($F=3.986$, $p<.05$), 3단계($F=19.731$,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 13.1%, 2단계 1.2%, 3단계 11.0%이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100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권리인식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20$, $p<.001$).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1$, $p<.05$). 3단계에서는 아동권리인식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35$, $p<.001$), 양육효능감($\beta=.010 \rightarrow -.111$)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 보다 낮게 나타나, 양육효능감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권리인식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3단계에서 양육효능감은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권리인식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과 과보호·허용 양육행동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완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4.498$,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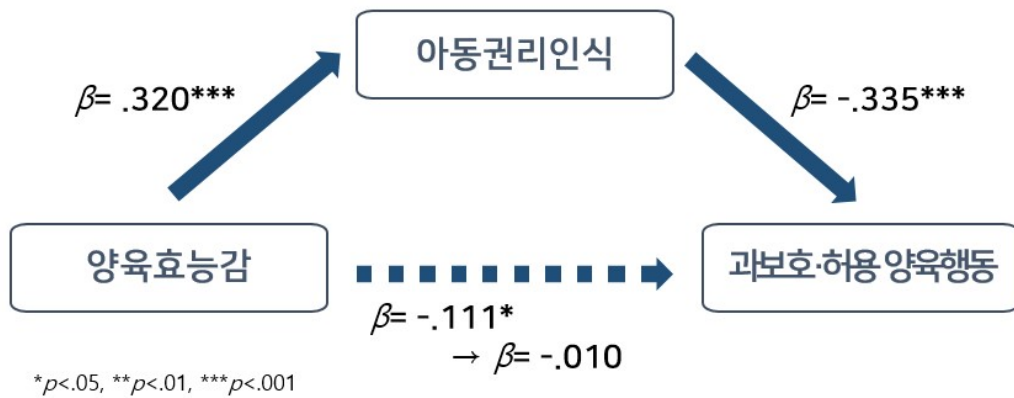
<표 29> 과보호·허용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SE	β	t(p)	R ² (adj.R ²)	F(p)
1	(독립)양육효능감 →(매개)아동권리인식	.320	.046	.320	6.949*** (.000)	.131 (.128)	48.294*** (.000)
2	(독립)양육효능감 →(종속)과보호·허용 양육행동	-.117	.059	-.111	-1.996* (.047)	.012 (.009)	3.986* (.047)
3	(독립)양육효능감 · (매개)아동권리인식 →(종속)과보호·허용 양육행동	.011	.060	.010	.813 (.855)	.110 (.104)	19.731*** (.000)

공차=.869, VIF 지수=1.150, Durbin-Watson=2.100

Sobel' s test Z = -4.498***

*p<.05, **p<.01, ***p<.001



[그림 3] 과보호·허용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4)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권리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30>과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48.294, $p<.001$), 2단계(F=72.761, $p<.001$), 3단계(F=36.330,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 13.1%, 2단계 18.5%, 3단계 18.5%이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83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권리인식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20$, $p<.001$).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beta=-8.530$, $p<.001$)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아동권리인식이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양육효능감이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동권리 인식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0>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S. E.	β	t(p)	R^2 (adj. R^2)	F(p)
1	(독립)양육효능감 →(매개)아동권리인식	.320	.046	.320	6.949*** (.000)	.131 (.128)	48.294*** (.000)
2	(독립)양육효능감 →(종속)거부·방임 양육행동	-.524	.061	-.430	-8.530*** (.000)	.185 (.182)	72.761*** (.000)
3	(독립)양육효능감· (매개)아동권리인식 →(종속)거부·방임 양육행동	-.532 .024	.066 .075	-.436 .017	-8.057*** (.000) .319 (.750)	.185 (.180)	36.330*** (.000)

공차=.869, VIF 지수=1.150, Durbin-Watson=1.783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6세에서 10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 인식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끄는 선행요인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아동권리인식의 차이

첫 번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온정·격려 양육행동은 부모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이, 부모교육 이수횟수가 높은 집단이, 아동권리협약을 아는 집단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관계분석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에서도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교육을 받을수록, 아동권리협약을 더 자세히 알수록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증가됨을 시사한다.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집단이, 자녀의 나이가 많은 어머니 집단이 한계설정의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적절한 규칙을 알려주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주요 능력 중 하나이다(유애형·조은진·신나리, 2022). 따라서 5-6세의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집단보다, 학교생활에서의 규칙준수가 중요해지는 8-9세의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집단에서 한계설정 양육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모교육을 1회 받은 집단보다 3회 이상 받은 집단과 아동권리협약을 아는 집단의 한계설정 양육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관계분석에서도 부모교육 이수횟수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 참여 횟수가 높을수록

한계설정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더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 과보호·허용의 양육행동은 부모교육 참여횟수가 높은 집단이 과보호·허용의 부정적인 양육행동 수준이 낮았고, 거부·방임의 양육행동은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이 거부·방임 양육행동 수준이 낮았으며 상관관계분석에서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교육 참여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양육효능감의 경우 부모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이, 부모교육 참여 횟수가 높은 집단이, 아동권리협약을 아는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모교육 참여횟수와 아동권리협약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아동권리인식은 부모교육을 3회 이상 참여한 집단이 더 적게 참여한 집단 보다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관관계분석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아동권리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분석을 통해 부모교육 경험과 아동권리협약 인지가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및 아동권리인식을 높이는데 의미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부모교육 경험이 긍정적 양육행동 증가와 부정적 양육행동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김선경, 2019, 정혜경, 2022)와 아동권리협약 인지 유무는 인권 친화적 양육태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밝힌 선행연구결과(김선희·윤재희, 2022)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온정·격려 양육행동과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율을 격려하는 행동을 보이며 반면에 낮은 양육효능감의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Mondell & Tyler, 1981; Coleman & Karraker, 1987; 문혁준, 1999, 문태형, 2002; 안지영·박성연, 2002; 김상미, 2011; 조경희, 2015; 정은희, 2015; 박현진, 2021)와도 일치한다. 다만, 양육효능감은 과보호·허용의 양육행동의 유의한 예측변인은 아니었지만 상관분석을 통해 관련이 있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은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육자가 아동권리인식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보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덜 취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안사라, 2012; 양순경, 2012, 이은주, 2012, 허은 2014, 신영금, 2017; 정익중·강지영·이수진, 2020)와도 일치한다. 아동권리인식은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유의한 예측변인은 아니었지만 한계설정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거부·방임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등 각각의 양육행동들과 관련 있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동권리인식은 온정·격려 양육행동에서 부분매개하고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는 완전매개하며 한계설정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에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인식이 온정·격려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는 것은, 양육효능감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동권리인식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행동 수준을 높이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권리인식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완전매개 함은, 양육효능감이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아동권리인식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가치는 양육상황에서 인지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즉 높은 아동권리인식은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여 과보호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적절한 훈육행동을 행함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어머니가 논리적 설명의 훈육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신영금(201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2. 제언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온정·격려 및 한계설정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증가와 거부·방임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며, 아동권리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온정·격려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하고 과보호·허용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아동권리인식은 온정·격려 양육행동에서 부분매개하고,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효능감에 아동권리인식의 영향이 더해졌을 때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하고, 양육효능감이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직접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아동권리인식을 통해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의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은 아니었지만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아동권리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요인으로 추측된다. 또한 부모교육의 참여횟수가 더 높은 집단의 양육행동이 더 긍정적이고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높다는 것은,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부모교육 참여가 긍정적인 양육행동 유지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별로 총 8회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 시 건강교육 뿐만 아니라 양육방법, 아동권리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어머니들이 정기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권리협약의 인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인지가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콘텐츠 구성에 있어 훈육방법, 의사소통 방법 등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태도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협약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함께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부모교육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은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본 설문은 자기 보고형으로 측정되어 실제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문항의 내용이 아동권리협약 조항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인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정교화 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양육행동 실천의 선행요인으로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의 관계를 밝히고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양육행동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양육행동과 자녀 발달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비해 적게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양육자의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연구는 더 적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자녀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기 위함으로 이는 아동권리증진과 그 의미가 같다. 따라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선행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양육자의 아동권리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경험과 아동권리협약 인지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아동권리인식을 높이는 변인으로써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형태, 인권교육의 경험, 아동권리협약의 인지 경로 등 다양한 변인 제시를 통해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는 5세~10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본 결과를 모든 연령대의 아동 양육에 확대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대를 확대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선행요인으로써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의 효과와 그 관계를 밝히고,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서울: 한학문화.
- 권영아. 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임. 201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아동교육』 20(2): 85-96.
- 김경인. 2000.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부모역할만족도가 아동권리존중양육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정·이경님. 2011.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253-271.
- 김반디. 2020.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중학생 자녀의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미. 2011. “어머니의 행동유형에 따른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DISC 행동유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경. 2019. “자폐 범주성 장애 영아 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태도 및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윤재희. 2022. “인권 친화적 양육태도 관련 변인 탐색: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인권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 유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42(1): 137-161.
- 김세현. 2011.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자·김현정. 2008. “유아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과 권리』 12(2): 117-134.

- 김순옥. 2002. “유치원·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정. 2008. “아동기 부모의 훈육방식과 양육행동이 기혼여교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 201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래. 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아. 2010.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연수. 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태형. 2002. “어머니의 사교방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문혁준. 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6): 25-35.
- 박경서. 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 마음이론발달과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자. 2004. “어린이·청소년의 특성과 바람직한 부모역량”. 어린이청소년 포럼 『어린이·청소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서울: 청림출판.
- 박두미.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옥. 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백종화. 2002.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터넷 이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35-145.

- 박성연·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성환. 2012. “블렌디드러닝 기반 부모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학. 2018.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또래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연.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배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전호. 2009. “양육효능감, 자기효능감, 자기조절감, 우울이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제처. 199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https://www.law.go.kr/>(2023. 05. 30).
- 보건복지가족부·세이브더칠드런. 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 보육교사용”.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세이브더칠드런.
- 보건복지부. 2022.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서기남·문혁준. 2009.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 연구: 유아의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5): 107-121.
- 성지현·백지희. 2011.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의 타당화 연구: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35-150.
- 세이브더칠드런. 2007. 『복지행정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손승희.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혜.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영금. 2017.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과 인권감수성이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윤옥. 2007.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와 유아 정서지능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현. 2004.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아동 권리 인식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사라. 2012.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박성연. 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양순경. 2012. “유아기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남희. 2008.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미희·임명희·김윤희·이세나·강현영. 2020. 『아동의 행복을 지향하는 아동권리와 복지』 경기도 고양: 도서출판 파워북.
- 유빛나. 2008.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이 아동권리존중을 지향하는 양육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애형·조은진·신나리. 2021.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자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9(1): 179-199.
- 육성환. 2019. “아동이 지각하는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성산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서희·성지현.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역할”. 『아동학회지』 35(4): 199-222.

- 윤희진·민혜영.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277-297.
- 이선희. 2012. “학령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송이.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61-71.
- 이수정. 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인식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 2001.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본 유아교육보육의 과제”. 『2001년도 춘계 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자료집』.
- 이승미. 2004.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12. “부모의 아동 권리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 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이재연·강성희. 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과 권리』 1(1): 65-83.
- 이재연·박은미·황옥경·김형모·이은주·강현아. 2008.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이재연·황옥경·김효진. 2009.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30(6): 153-165.
- 이재연·황옥경·강현아·서영숙·이완정·구은미·정선아. 2018. 『아동권리와 복지』. 서울: 창지사.
- 이현정. 2012. “부모-자녀 동반자살’을 통해 살펴 본 동아시아 지역의 가족 관념: 한국, 중국, 일본 사회에 대한 비교문화적 접근”. 『한국학연구』 40: 187-227.
- 이혜원. 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서울: 나남출판.
- 장성오·김용미.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발도르프교육연구』 3(1): 91-111.
- 전현진. 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진. 2009.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현. 2011. “영유아기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개발”. 『부모교육연구』 8(1): 69-85.
- 정계숙·김명애·김혜금·문혁준·심희옥·안효진·양성은·이정희·이희선·정태희·제경숙·한세영. 2007.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
- 정은희.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육플로우의 매개효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강지영·이수진. 2020. “한국 아동권리의 현주소 : 동상이몽, 부모자녀 아동권리인식비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9(15).
- 정혜경. 2022. “영유아 어머니의 부모교육경험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9(2): 199-211.
- 조경희. 2015.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람. 2008. “한 자녀를 둔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자·이서영. 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영유아 권리 및 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 일반가정과 취약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0(2): 277-295.
- 조영숙·이양희. 200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취약전 아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4): 97-112.
- 최경옥. 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학진. 2007. “아동인권에 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최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한국아동학회』 22(3): 1-15.
- 표갑수. 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경기도 파주: 집문당.
- 한은지. 2020.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은. 2014. “아버지의 아동권리인식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강. 1994.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은주·이보영. 2020. “부모의 인권감수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 인식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1): 775-788.
- 홍미라. 201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옥경. 2012. “영유아기 원리에 대한 유엔의 권고 분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1): 27-49.

- Allen, C. 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predictors. *Family Relations* 42: 13-24.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 126-148.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 - 222.
- Gibaud-Wallston, J., & Collins, W. A. 1990.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eeting. Tronto, Canada.

- Goodnow, J. J., & Collins, W. A. 1990. Development according to parents: The natur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parents' idea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amner, T. J. & Turner, P. H. 1996.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3rd ed. Boston: Allyn & Bacon.
- Jho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2: 614-623.
- Kendall, S. & Bloomfield, L. 2005. Developing and validating a tool to measure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1(2): 174-181.
- Kohlberg, L.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Moral stages and the idea of justice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1). San Francisco: Harper & Row.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OHCHR. 2005.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nual Report 1-258.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Oxford: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
- Teti, D. M. & Gelfand, D.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Abstract>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 -

Kim, Jeong e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Kwan Wo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parenting 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This study surveyed 320 mothers who have children aged 6 to 10. The data were collected, analyzed, and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Ver.29.0) Program.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one 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used.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ly, mother group that had parent education showed a higher level of the affection and encouragement parenting behavior and of the boundary setting parenting behavior, and showed a lower level of the overprotection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Also, this group showed a higher level of the

parenting efficacy and the perception of children' s rights. The perception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significant factor to enhancing the affection and encouragement parenting behavior.

Secondly, mother' s parenting efficacy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affection and encouragement parenting behavior and the boundary setting parenting behavior, and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rejection and neglect parenting behavior. Mother' s perception of children' s right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affection and encouragement parenting behavior and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overprotection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In other words, the parenting efficacy and the perception of the children' s rights were found to be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enhanced mother' s positive and rational parenting behavior and diminished the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hirdly, the perception of children' s right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parenting efficacy and the parenting behavior was identified as partial mediation in the affection and encouragement parenting behavior. The study also found that perception of children' s rights was a complete mediation in the overprotection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but it had no mediation effect on the boundary setting parenting behavior and the rejection and neglect parenting behavior.

Consequently, mother' s parenting efficacy and perception of children' s rights were identified as influential factors in conducting a positive and rational parenting behavior. The parenting efficacy enhanced mother' 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level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perception of children' s rights. Also, It was found that the negative parenting behavior level was low through the midium of the perception of children' s rights even with the low level of the parenting effica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ther' s parenting efficacy and perception of children' s rights need to be enhanced for conducting mother' 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lso the parent education

experience and the perception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e significant factors that raise the parenting efficacy and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As a result, the content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ust be included in the parent education and consistent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is needed for the effective parent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tecedents that lead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then help mother to intend and practice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dditio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the parent education and offering necessary sources, and then eventually helping children's healthy growth and the enhancement of the children's rights.

**Key Words: Mother,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

< 설 문 지 >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아동권리인식의 매개효과 -**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가정이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2014년(10세)부터 2019년(5세)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권리인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귀하의 평소 생각과 행동에 가까운 내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며 연구윤리 기준 및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애써서 작성해주신 설문지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 고관우

연구자 : 김정은

문의 : assakje@gmail.com

본 설문지의 응답 대상은

2014년(10세)부터 2019년(5세) 사이에 태어난 아동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만약 2014년~2019년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한 명을 선택하여 해당 자녀를 기준으로 답변 바랍니다.

*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행동과 태도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계속해서 대답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이가 일정한 곳에서만 식사를 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스스로 해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집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일이라도 밖에서는 아이와 실랑이하고 싶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일상적인 일(예: 밥먹기, 세수하기, 가방 챙기기)은 아이 스스로 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자녀 양육이 즐겁기보다는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의 기분이 나쁠 때 그 이유를 물어보고 기분을 풀어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가 하는 일이 다소 서툴더라도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가 버릇없게 굴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와 아이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무조건 내 의견을 따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꾸짖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아이에게 뽀뽀하거나 안아주기와 같은 애정표현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다른 일을 핑계로 혼자 놀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 두고서 반드시 지키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야단치다가도 아이가 울면 중단하고 얼른 달래준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는 그 고집을 꺾고 결국 내 말을 듣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를 감싼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아이의 나쁜 점을 지적할 때보다 좋은 점을 칭찬할 때가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간혹 아이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면 대부분 사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아이가 놀고 난 후에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아이에게 한번 안 된다고 말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아이가 실수를 해도 다음에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아이가 친구와 놀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 인지를 가르쳐준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아이가 정해진 취침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아이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이 스스로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해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아이가 혼자서 놀게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아이에게 성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만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양육효능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부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의 학습능력이 높아지도록 집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아이가 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아이에게 유익한 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아이가 위험지역이나 외진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의 각 문항은 아동권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의 권리들이 아동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요하지 않다	별로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1	어쩔 줄 모르거나 기분이 나쁠 때 성인의 도움을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부모 모두와 함께 살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아동을 보살펴 주고 필요하면 아동의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이 아동을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아동을 공정하게 대해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과 잘 사귀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아동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아동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9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①	②	③	④	⑤
10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11	아동의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⑤
12	아동과 관계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이 존중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3	아동이 좋아하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	①	②	③	④	⑤
14	놀이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15	자발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의 종교, 언어, 피부색, 사회적 신분을 존중할 줄 아는 것	①	②	③	④	⑤
17	아동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8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19	아동의 능력과 노력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좋은 교육을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20	아동은 모두 다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내용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21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아동만의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22	어른이 되기 전 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⑤
23	마음껏 쓸 만큼의 돈이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24	아동의 나이에 맞는 행동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25	아동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26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기회를 가지는 것	①	②	③	④	⑤
27	아동 방식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존중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28	아동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29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존중해 주는 아동만의 생각, 의견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30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31	아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른의 관심과 지도를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32	위험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⑤
33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무거워 진다는 것을 아는 것	①	②	③	④	⑤
34	아동의 감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35	공부 할 장소를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36	때가 되어 아동의 원하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37	아동과 다른 사람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⑤
38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39	아동이 배우기 위해서 바라는 만큼의 도움을 얻는 것	①	②	③	④	⑤
40	아동의 몸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하거나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
 2. 귀하의 취업여부 및 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종일제 취업(하루 8시간 이상 근무) ② 시간제 취업(파트타임)
③ 프리랜서(유연근무) ④ 전업주부
 3. 가정에서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어머니(본인) ② 아버지(남편) ③ 조부모(친정 또는 시부모) ④ 친척 ⑤ 위탁모
⑥ 부모공동(부부공동: 부모 중 누가 더 주로 양육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경우) ⑦ 기타()
 4. 귀하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기타(명)
 5. 귀하는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5-1번으로) ② 없다(6번으로)
↳ 5-1.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횟수는?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이상
 6. 귀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6-1번으로) ② 모른다(7번으로)
↳ 6-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제목만 알고 내용은 잘 모른다.
② 제목과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③ 제목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 다음은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한 명을 선택하여 해당 자녀를 기준으로 답변 바랍니다.
7.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8. 자녀가 태어난 연도는 언제입니까?
① 2019년(5세) ② 2018년(6세) ③ 2017년(7세) ④ 2016년(8세) ⑤ 2015년(9세) ⑥ 2014년(10세)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바랍니다 ♥